

8. 土地區劃整理事業法施行規則中 改正令

建設部令 第549號 1994. 3. 22

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의 시행지구 및 공구의 설정란의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시행지구에 진입도로가 없어 인근의 도로등과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설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0미터의 범위안에서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지역을 시행지구에 포함하여야 한다.

[별표]의 보류지책정란의 제3호가목(1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1) 간선도로외의 지구내 도로를 배치 할 때에는 가급적 주간선도로에 접 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 되지 아니하도록 주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, 보조간선도로 상호간, 보조간선도로와 접산도로, 접산도로 상 호간, 접산도로와 국지도로 또는 국 지도로 상호간에 연결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, 필요시에는 회전차선·변 속차선 또는 교통섬 및 입체교차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, 주

택지에는 간선도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
[별표]의 공사계획란의 제2호라목(1) 및 (2)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(1) 시행지구안의 급수를 위한 상수도 배수관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당해 시행지구와 그외 지역의 급수를 함께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의 설치비용은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.

(2) 시행지구안의 하수를 배수하기 위한 하수관 거의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당해 시행지구와 그외 지역의 하수를 함께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관거의 설치비용은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.

[별표]의 공사계획란의 제4호중 “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”을 “건설기술관리법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

행 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·직할시장

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[별표]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(제3조)

현 행		개 정 안	
구 분	계획작성의 기준 및 방법	구 분	계획작성의 기준 및 방법
시행지구 및 공구의 설정	1. (생 략) 2. 시행지구 및 공구 가. ~라.(생 략) (신 설)		1. (생 략) 2. 시행지구 및 공구 가. ~라.(생 략) 마. 시행지구에 진입도로가 없어 인근의 도로등과 연 결되는 주진입도로를 설 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0미터 범위안에서 주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지 역을 시행지구에 포함하 여야 한다.
보류지책정	1.~2. 3. 공공시설용지 가.(생 략) (1) 간선도로외의 지구내 도로를 배치할 때에는 간선도로와의 교차가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 며, 주택지에는 간선도 로를 배치하여서는 아 니된다.	보류지책정	1.~2.(현행과 같음) 3. 공공시설용지 가.(현행과 같음) (1) 간선도로외의 지구내 도로를 배치할 때에는 가급적 주간선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 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 니하도록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, 보조간 선도로 상호간, 보조간 선도로와 집산도로, 집

현 행		개 정 안	
구 분	계획작성의 기준 및 방법	구 분	계획작성의 기준 및 방법
	<p>(2)~(3)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공공시설의 설치</p> <p>가.~다.(생 략)</p> <p>라. 상하수도</p> <p>(1) 상수도의 배수관설치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수도사업특별회 계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(2)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</p>		<p>산도로와 국지도로 또는 국지도로로 상호간에 연결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, 필요시에는 회전차선·변속차선 또는 교통섬 및 입체교차 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, 주택지에는 간선도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(2)~(4) : 현행과 같음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공공시설의 설치</p> <p>가.~다.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상하수도</p> <p>(1) 시행지구안의 급수를 위한 상수도배수관설치 비용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당해 사업시행지구와 그외 지역의 급수를 함께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의 설치비용은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.</p> <p>(2) 시행지구안의 하수를 배수하기 위한 하수관</p>

현 행		개 정 안	
구 분	계획작성의 기준 및 방법	구 분	계획작성의 기준 및 방법
공사계획	체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.	공사계획	거의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당해 시행지구와 그외 지역의 하수를 함께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관거의 설치비용은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.
	마.(생 략)		마.(현행과 같음)
	3.~4.(생 략)		3.~4. 현행과 같음
	1.~3.(생 략)		1.~3.현행과 같음
	4.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공사감리규정을 준용하여 공사를 시공감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		4.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준용하여 공사를 시공감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□ 개정이유 □

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의 상·하수도의 급수관 및 배수관과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 □

가. 종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지구안의 간선도로배치계획만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지구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개

설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진입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200미터이내의 진입로는 사업시행지구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진입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함(별표).

나.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에 간선도로를 배치함에 있어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교차점은 가급적 적게하되,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는 주간선도로에 직접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(별표).

다. 종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의 상·하수도의 급수관 및 배수관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상·하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해당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있으므로 앞으로는 상·하수도의 급수관 및 배수관의 설치계획을 당해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함(별표).

〈건설부 제공〉

내몸같이 깨끗하게 내집같이 아름답게